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 오영환·이용선·홍정민

한준호 · 장경태 · 김남국

최혜영 • 이정문 • 김용민

이규민 · 고영인 · 진성준

우원식 • 박상혁 • 서삼석

김민철 • 민병덕 • 고민정

이재정・강득구・서영석

전혜숙 · 양향자 · 박주민

소병철 · 전용기 · 문정복

이병훈 • 이수진 • 이용우

양이원영 · 정청래 · 박재호

김승원 · 황운하 · 허종식

김주영 • 유정주 • 김영배

주철현 • 박홍근 • 서영교

임오경・김한정・야전(비)

윤영덕 · 이형석 · 박광온

임종성 • 박찬대 • 문진석

도종환 · 노웅래 · 이소영

천준호 의원(5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의 편리성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 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제52조의5 및 제108조제1항제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내부 마감재료·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5(가연성 복합자재의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심재를 포함한다)는 준불연재료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

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제108조제1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2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및 제52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제52조의5 및 제108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내
	<u>부 마감재료·건축물 외벽의</u>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
	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
	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
	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
	는 건축물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u> </u>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병	}

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하다.

<신 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108조(벌칙)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_	-	-	_	_	-	-	-	-	_	-	_	_	_	_	-	_	-	_	_	_	_	-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52조의5(가연성 복합자재의 사 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하는 복합자재(심재를 포함한 다)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 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 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

1. (현행과 같음)

는 건축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2.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 4 (생 략)
② (생 략)

<u>및 제52조의5</u>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